

1. 유학생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기본 원칙

- 체류자격별 개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외 활동이 가능한 경우 허용

(예) 「회화지도 강사(E-2)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석·박사과정 유학활동 중인 유학생이 회화지도(E-2) 강사 자격요건을 갖추면 회화지도(E-2) 활동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가능

2.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 (대상)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외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특례 적용 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 (처리요령) 연구(E-3) 자격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
- (허가기간) 1회 최대 1년
- 제출서류
 -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 유학생(D-2)이 동 특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에 따라 2만원의 수수료 징구

나. 유학생 가사육아 분야 활동(2025.12.19. 시행)

(주의)

외국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활동 개시 신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것이므로 허가 조건 2회 이상 위반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1. 대상 및 기준

- (대상)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D-2, D-10-1)
- (한국어능력) 희망 업무 범위에 따른 한국어 능력 보유*
 - (가사)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3단계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최소기준)
 - (육아)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배정)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최소기준)

* 단, 시범운영에 한해 지방자체단체에서 면접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학과장

추천서 등 추가서류 제출 시 완화 가능

○ (교육이수) 업무 범위별 교육 이수

※ 업무 범위별로 요건이 상이하며, 활동 범위(가사,육아) 변경 시(예시: 가사 → 가사 + 육아 활동)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건강)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 등 제외

○ (제외대상) 국내·외 형사범죄 기록(기소유예 포함)이 있거나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제외

○ (신청방법) 시범운영 지자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사·육아 분야 등)

○ 제출 서류

- ① 여권, 유학생 가사·육아 활동 확인서
- ②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1부
- ③ 필수 및 가사·육아 분야 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증빙 서류 1부
- ④ 채용신체검사서

▪ (발급기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확인

▪ (검사내용)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포함하는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시범운영 기간 특례(' 25.12.31.)

- 국내 연속 체류기간 2년 이상인 자 : 2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하는 동안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 징구 후 제출 면제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 징구 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3개월 부여(3개월 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보완 요청)

○ (수수료) 면제

2. 심사 방법

(주의)

- 1. 유학생의 경우, 가사·육아 활동 시 기존 시간제 취업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신청, 시간제 취업으로 신청 시 반려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사·육아 분야 등)로 신청할 것을 안내
※ 가사·육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전 사전허가 방식인 점, 지속 모니터링 등 별도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간제 취업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관리 필요
-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와 함께 허가조건(계약 후 7일내 활동개시 신고)을 반드시 출력하여 교부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단, 외국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허가)

- 다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에 한해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을 제출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개월 부여 가능(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재신청 시 제출 안내)

○ (범죄경력 확인) 국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급 불허*

* 단, 범죄내용이 가사·육아 활동을 위한 자질과 무관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 가능

※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회화지도 강사(E-2)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준용

- (건강상태 확인)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 등 제외
- (교육이수 확인) 활동 범위(가사, 육아, 가사·육아)별 필요 교육이수 여부 확인, 이수 여부는 가사·육아 분야 교육 확인서로 확인
 - 가사 활동자의 경우 : 기본교육(필수·가사) 이수 필요
 - 가사·육아 활동자의 경우 : 통합교육(필수·가사·육아) 이수 필요
 - ※ 활동 범위 변경시(예시 : 가사 활동 → 가사+육아 활동)에는 활동 범위에 맞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심사완료 후 유의사항
 - (방문민원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및 허가조건 교부
 - ※ ICRM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력 시 허가조건이 자동으로 함께 출력
 - (전자민원 시) 전자민원 허가확인서 및 허가조건 교부
 - ※ 전자민원 신청 시, 전자민원 허가확인서와 함께 허가조건이 자동으로 함께 출력
- (ICRM 처리방법) 민원처리 - 가사·육아 분야 활동(신설) - 활동허가

3.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개시 신고

- 외국인 활동개시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조건)
 - (신고대상) 가사, 육아 분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신고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시범운영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청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가사·육아 분야 등 활동개시 신고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① (전자민원) 계약서, 서비스 이용가정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방문민원)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계약서, 서비스 이용가정 주민등록등본 1부
 - ※ 가족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으로 활동 하는 경우, 이용가정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처리 기준
 - (활동 시간 확인) 계약서 확인을 통해 기존에 활동하던 시간제 취업 시간과 합산하여 가사·육아 분야 활동 포함 최대 3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 처리
 - (근무장소 개수 확인) 기존에 활동하던 시간제 취업 장소 포함 근무장소 3곳 내에서 신고 처리
 - ※ 기존 시간제 취업 기준과 달리 '취업 시간 35시간 및 취업 장소 3곳 가능' 다만, 인센티브는 가사·육아 분야 활동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참고)

<가사·육아 분야 활동 유학생 취업 허가 시간 추가 부여 >

- 가사·육아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하는 유학생은 **인증대학·한국어·성적우수 우대사항 없이도 주 35시간 까지 시간제취업 허가 시간 부여**
 - ※ 현재 한국어능력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10시간만 부여하나,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 시 활동별(가사, 육아)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 최대 35시간 부여
 - 예) 일반대학 (전문)학사 주 25시간 가능 → 가사·육아 활동 시 최대 35시간
- (ICRM 처리방법) 민원처리 - 가사·육아 분야 활동(신설) - 개시 신고
- ※ (계약서 확인사항) ①계약일로부터 신고기간 7일 도과 여부, ②총 활동시간(35시간) 및 ③활동 장소(3곳) 초과 여부를 확인 ⇨ 위 세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구두(문자메시지, 유선 등) 경고 후 수리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취소

○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취소

- (취소 요건)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2회 위반 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취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소)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소 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 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 변경)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3호의 허가 조건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4호의 '중대한 사유', 5호의 '다른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1. 외국인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2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2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시간제 취업허가

가.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 원칙적으로 전문분야(E-1~E-7)에서의 시간제 취업은 제한되나, 요건을 갖춘 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

나. 대상자 요건

1. 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D-2-2~4, D-2-6~8)

① 성적	▶ 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료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 적용 제외하되,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기간은 1학기(3월말, 9월말)로 제한		
② 한국어 능력	▶ (학사 1-2년) 3급 상당 ▶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상당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영어트랙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한국어 능력(영어트랙은 영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성적 기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가하되, 허용 시간을 1/2 이하로 제한		
③ 체류기간	▶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함		

2. 제한대상

-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예)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학점, 출석률) 미비 등 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 단,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미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상 활동 요건

1. 원칙

-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 ※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 취업 제한

2. 제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조의 영업장 예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허용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주의)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며**(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최초 위반이라 하더라도 완화* 없이 원칙대로 처벌

* "아.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의 1차 적발 시 완화규정 배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 원거리 근무

3. 예외적 허용

-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인 경우
 -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①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②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
 - ①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보조 활동 예시]

- 전문분야 자격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보조의 의미가 아닌, 전문분야 자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의미
 1. 전문 통번역가 부재 시 통번역 보조로 허가 받은 시간제 취업 유학생이 통번역 담당 ⇨ **불가**
 2. 전문 통번역가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료검색 및 분석, 설문조사, 상담 진행, 문서 작성 ⇨ **허용**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과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허용범위)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방학 중 횟수는 제한없음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대상) 학위과정 유학생(D-2) ※ 단, 연구유학(D-2-5)는 제외
- (내용) 방학 기간에 한하여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과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주의)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라. 허용 시간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총족 여부	주중	주말·방학	
학사	1~2	① 3급	×	10시간		10시간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① 4급	×	10시간		10시간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무관	① 4급	×	15시간		15시간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1. 기본

구 분	학사과정	석·박사 과정
주당 허용시간(최대)	25시간	30시간
참고사항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은 시간제한 제외(학위과정 우대사항)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구 분	인증대 재학생	성적우수자	한국어 능력
우대요건	인증대	직전 학기 A학점 이상	5급 상당*
우대사항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종합평가 합격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 없이 아래 시간만 허용

구 분	(전문)학사과정	석·박사 과정
주당 허용시간(최대)	10시간	15시간

마.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면제
- 성적증명서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한국어능력]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바. 허가 내용

- (자격약호) D-2-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
- (허가기간 및 장소) 학위과정(D-2)은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최대 2곳으로 한정
 - ※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사. 장소 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아.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주의)

-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적발 횟수와 무관, 예외 없이 출국명령 (단, 입국규제는 유예하고, 학업 의지가 있는 경우 사증 발급 후 재입국 허용)

- (2차 적발)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 (2차 적발 시) 법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법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 * 2차 적발 이후 시간제 취업 제한 및 불허 대상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 해당

자. 시간제 취업 허가 제외 대상(허가 없이 가능)

1. 일시적·일상적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가 불요

- 유학 활동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시간제 취업허가 제외 대상(예시)】

-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 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 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연·감정, 행사 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 통역 요원으로 지정되어 경찰청에서 지정한 순번과 선호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통역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전문 통역관으로 채용되어 전문 직종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허가·면제 여부 판단

2. 학위과정 유학생(D-2-5 제외)의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

- 학위과정 유학생(D-2-5 제외)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또는 인턴 활동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 ① (소속대학 내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② (소속대학 외 연구·인턴 활동) 소속대학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연구 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심사기준은 개별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주의)

- 학업 연계 여부는 학점 취득·졸업 연계, 논문 작성 연계 등 대학 측의 판단을 종합하여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①지도교수 확인서,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①~③ 자율양식)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학업 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

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 활동

○ 대상활동

- (표준 현장실습)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이하 "표준 현장실습")

* 대학 본부-실습 기관-학생 간 사전 협약서(법정 표준 서식) 작성 후 운영

(주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이하 "자율 현장실습")로 나뉘지며, 이 중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참여를 위해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필수 현장실습)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이하 "필수 현장실습")

[필수 현장실습]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현장실습 구분에 따른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여부】

구 분	면제 가능 여부	비 고
표준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교육부 사후 관리 대상
필수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개별 법령에 필수로 규정
자율 현장실습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대학 자율 운영

○ (내용)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 현장실습학기제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의 형태로, 전공 관련 실무 경험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취업허가를 면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 장소 : 대한항공빌딩(중양동) 1층

※ 주소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6(중양동 4가 77-1)

○ 찾아가는 길 : 지하철(1호선) 부산역 2번 또는 중앙역 14번 출구

○ 업무시간: 월~금, 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 문의전화 : 1345

○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